

**식품의약품안전청 명령**

불기 2559년(서기 2016년) 제161호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조사의 배정에 관하여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이 임명한 사람은 화장품 위원회의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제2/2559호 회의에서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조사의 기준에 관한 화장품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90조 및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조사 기준에 관한 불기 2559년(서기 2016년) 화장품 위원회의 규정 제4조에 따른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령을 공고한다.

제1조 다음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을 대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법률 그룹 에서 왕국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주장되거나, 발생했다고 믿어지는 위법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2) 식품의약품청 법무관, 식품의약품 법률 그룹 및 이 수준 이상의 전문가들은 방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주장되거나, 발생했다고 믿어지는 위법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3) 도지사와 도의 공중보건의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도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주장되거나, 발생했다고 믿어지는 위법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제2조 제1조에 따른 직위를 보유한 사람은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른 불기 2559년(서기 2016년) 조사 기준에 관한 화장품 위원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명령은 즉시 시행한다.

불기 2559년(서기 2016년) 4월 20일 명령



분차이 솜분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